

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개선에 대한 진정서

진정인 : 진보네트워크센터

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-1번지 우리타워 3층

○ 지난 2월 19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‘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관련 바우처 이상 결제 현황(2012~현재, 보건복지부)’ 자료에 포함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1천 명 이상의 주민번호·주소·연락처 등에 대한 제공을 인천시에 요구하였습니다. 그리고 시는 구청을 통해 활동보조인 제공기관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였습니다.

<http://beminor.com/news/view.html?section=1&category=3&no=6503>

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625462.html

제공기관 중 일부가 이와 같은 개인정보 제공 요구에 반발하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인천지방경찰청은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. 그러나 종결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, 경찰이 이같이 방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언제 또다시 요구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.

○ 경찰이 수사 대상자를 특정하고 법관의 영장 등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도 이와 같이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서 이같은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한 데서 유래한 측면이 있습니다.

○ 개인정보의 이용·제공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제2항에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로서 9개 호를 열거하고 있습니다. 그중 제7호는 "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"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.

안전행정부 제정의 ‘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가이드라인’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목적으로 CCTV자료를 요청한 경우 본인 동의 없이

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 조항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기도 합니다.

○ 결국 이 조항은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상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, 법관의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 명령, 혹은 본인의 동의 없이도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널리 해석되고 있습니다.

○ 이에 따라 경찰이 뚜렷한 입증 없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저인망 식으로 수사하는 데 이 조항이 오남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이는, 개인정보의 수집·유출·오용·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,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고 있습니다.

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정보주체의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에도 수사기관이 일종의 강제수사로서 이 정보를 제공받을 때 영장주의 등 적법절차를 회피함으로써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입니다.

또 이와 같은 법률이 존재하는 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아무런 잘못 없이 그 개인정보가 상시적으로 경찰에 제공될 수 있으며, 이러한 정보 환경은 특히 노동권을 옹호하는 활동가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.

무엇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제공받을 때 영장이 필요없고 제공요건도 사실상 모호하여 무제한적이라는 사실은 결국 개인정보보호법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서 이 조항에 대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.

○ 결론적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를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.

경찰 등 수사기관이 공공기관이나 사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엄격한 요건 하에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.

입법부에서도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의 타당성을 방증합니다(변재일 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: 1907084).

○ 이에 우리 단체는 귀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. 끝.